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 22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수 원 지 방 법 원 안 양 지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2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남상오(기소), 정혜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7. 21.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 5층에 있는 D학교에서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고, 피해자 E(9,464)는 위 학교 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명예훼손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와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8.20. 16:40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나처럼 돈 없고 빽 없으면 겸손해 봐라", "늙었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0.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7. 8.23. 13:04경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7. 8. 24. "○○보지 떡보지", "○○보지에 넣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7. 8. 23.경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1. 각 F 메신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정보 유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 선고에 따라 석방된 지 불과 며칠만에 또다시 종전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만 20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경민